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4 | 2026.10.19. (2026.10.12. ~ 2026.10.1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의 전시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은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대표 전시회 5개 이상 육성, 대형 융복합 전시회 개최 확대를 목표 4대 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화장품 제조 중심의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新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하고,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에 따라 위임된 보유주식 수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인가 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조정가능한 공동주택의 비율을 최대 1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등 국가경제

및 경제안보상 중요성이 큰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진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윤한홍의원 등 19인)」** ,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의 선택 폭과 민간자본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등의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진욱·박성민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의 일부를 제척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2026년도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10.19. 8개 위원회, 10.20. 12개 위원회, 10.21. 5개 위원회, 10.22. 10개 위원회, 10.23. 8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발표(산업통상부) 6
-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9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9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1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13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14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15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15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15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윤한홍의원 등 19인) 1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18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26인) 18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9인) 18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1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1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
-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진욱·박성민의원 등 11인) 21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2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2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최기상의원 등 10인) 2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5인) 2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23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24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2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감리업체가 시공사에게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벌점부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벌점부과 취소 의결을 이끌어낸 사례
-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 및 시사점 :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및 반복 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 강화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기관투자자 주주관여의 본격화: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소통 체계 구축
- [에너지·인프라]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공고 및 ESS 구축지원 사업 공고
- [방송통신(TMT)] 통신 분야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9. 30. - 2026. 10. 13.)
- [공정거래] 자진신고제도를 비롯한 담합 관련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 - 공정위, 반복담합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추진, 자진신고 감면 혜택 축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 [방송통신(TMT)]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발표 - 수출 1조달러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 - 5극 3특 성장엔진, 문화·관광 연계 통해 지역 거점 특화 전시회 육성	2026-10-14
-------	--	------------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의 전시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은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음

전시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교류를 통한 ‘산업 혁신 플랫폼’으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번 로드맵은 수출 1조 달러 시대의 수출 지원체계 혁신과 킨텍스 제3전시장(‘28.11, 총 17만㎡), 잠실 마이스 단지(‘31.10, 총 9만㎡) 완공 등 국내 전시 인프라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밝힘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대표 전시회 5개 이상 육성, 대형 융복합 전시회 개최 확대를 목표로 ▲국가대표 글로벌 전시회 육성, ▲지역 거점 특화 전시회 육성, ▲K-전시산업 해외 진출 확대, ▲전시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함

① 국가 대표 글로벌 전시회 육성

- 전자, 반도체, 로봇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를 육성
- 올해부터 한국전자전, 반도체대전, 아시아기계&제조산업전, 로보월드와 같은 국내 주요 전시회를 'AI'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
-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28.11)되는 계기에 해당 전시회들을 통합하고, 해외 유명 인사 초청 컨퍼런스 개최, 콘텐츠 다양화와 전문화 등을 통해 아시아 최고 첨단산업 전시회로 육성할 계획
-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전시회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를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
- 해외 바이어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참관객이 미식 체험, K-POP 공연, 지역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연계

② 지역 거점 특화 전시회 육성

- 5극 3특 성장엔진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관광·상권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지방 대표 전시회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2027년부터는 지역성장엔진과의 연계성, 구체적 성장전략, 전시 인프라 및 규모,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전시회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
- 이를 위해 전시산업 지원 예산도 금년도 70억원에서 내년도 117억원으로 47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안 편성
- 지역 내 전시 사업자와 기업,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전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이에 더해 지방 전시산업의 거점이 될 '전시산업 발전지구' 지정을 추진

③ K-전시산업 해외 진출 확대

- 인도·중동·중앙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내 전시장 운영기관의 노하우와 KOTRA, 무역협회 등의 전문 네트워크를 서로 결합하여 해외 전시장 건립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진출을 밀착 지원
- 현재 소비재 품목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시회의 해외 개최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전시 콘텐츠도 강화할 계획
- 해외 시장조사, 현지 사무소 개설, 민간 공동 브랜드 진출을 지원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에는 바이어 매칭과 수출 바우처 등을 연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 확대에 이어지도록 할 계획

④ 전시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 전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시산업의 지원체계, 제도, 기술, 인력양성 등 산업의 기반을 전면 재정비
-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전시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무역 거래’ 중심에서 ‘산업 혁신 플랫폼’으로의 전시회 기능을 재정의하는 등 「전시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 AI 전환(AI), ESG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시사업자의 AI 솔루션 도입과 친환경 전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채용 연계형 인턴 교육, 지역 맞춤형 전문교육 등을 통해 전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관계부처 합동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 발표

- AI 진단·맞춤형 화장품 등 新서비스 육성, 메디컬 뷰티 경쟁력 제고 추진

2026-10-14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에서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화장품 제조 중심의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新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하고,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힘

최근 AI·융복합 확산에 따라 피부진단, 로봇조제 등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메디컬 뷰티·피부관리·메이크업 등 서비스 간 융복합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K-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및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방안은 ①AI 진단·맞춤형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新서비스 집중육성 ②융복합 K-뷰티 서비스의 지역·글로벌 확산, ③메디컬 뷰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함

① AI 진단·맞춤형 화장품 등 고부가 新서비스 집중 육성

- 18개국 1만 7천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축적한 피부 데이터뱅크를 관련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에 적합한 인공지능 데이터(AI-Ready)로 전면개편하고 대상국가도 확대해 기업들의 AI 피부진단·분석 및 개인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지원

- 맞춤형 화장품 등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품질·공정 AI 에이전트 기술개발(R&D)을 위한 ‘화장품-AI기업 연합 R&D’를 지원(’26~’27년 72억원)하고, 초개인화 뷰티로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AI·융복합 K-뷰티 유망 기술군을 발굴해 후속 R&D로 연계
- AI·자동화기기 활용 맞춤형 화장품 ‘현장애로 개선’ 추진

② 융복합 뷰티 서비스 지역·글로벌 확산

- 홍대·명동·부산의 ‘K-뷰티 체험·홍보관’ 등을 활용해 AI 피부진단, 가상 메이크업 등 뷰티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쇼핑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피부·헤어·메이크업부터 관광·쇼핑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기반을 확충
- 외국인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 QR코드 설치업장 확대 가속화(’26년 4만개 점포 → ’27년 8만개 점포)
- 지역의 K-뷰티 서비스 생태계 확충을 위해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홍보·체험과 바이어 상담 등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를 경주와 제주 두 곳에 조성해 지역의 뷰티 서비스와 관광·쇼핑의 연계를 강화
- 내년 상반기 중 K-뷰티 아카데미를 개원(충북 오송)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헤어·메이크업 등 K-뷰티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연평균 1,900명)

③ 메디컬 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피부·성형 등 외국인 환자의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의료기관 정보 제공,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 연계 등을 통합 제공해 외국인 환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
- 외국인 환자 대상 메디컬 뷰티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해 비자 신속 발급이 가능한 지방 소재 의원급 우수 유치 기관을 확대하고, 의료관광 비자 발급 심사요건과 절차 개선도 검토
- 지방정부 공모 등을 통해 메디컬 뷰티 복합 거점을 구축하고 항노화 등 고부가 서비스와 연계한 체류형 패키지 개발·운영을 추진
-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現 기관당 2명)를 상향하고, 환자의 권리·책임, 계약서·견적서·동의서 등을 다국어로 번역·보급하는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편의와 분쟁 예방 지원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2027-04-14 시행 예정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 제도를 기업재난관리자 자격 제도로 변경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7-04-14 시행 예정
-------	----------------------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0-13 시행
-------	--------------------	---------------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로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10-14 시행 예정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0-13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13. ~2026.11.0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고자 함

① 보유주식 수 통지절차 마련 (안 제16조)

- 보유주식 수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관한 통지 방법을 마련함

② 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인가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안 제20조)

- 회사의 자본금 감소 등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함

③ 기간통신사업의 폐업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24조)

- 기간통신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 중 등록증을 제외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044-202-6625, 팩스: 044-202-6041)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14. ~2026.11.24.
-------	-------------------------------	-----------------------------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거·비주거의 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여(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조정가능한 공동주택의 비율을 최대 1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기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함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필로티층 포함 시 최대 5층)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이 추진됨(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기존 4층에서 필로티 포함시 5층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전화: 044-203-4040, 팩스: 044-203-4708)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14. ~2026.10.23.
-------	-------------------------	-----------------------------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화물 취급 거점이 권역별 서브 터미널 등으로 대형화·집적화되는 택배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3, 팩스: 044-201-560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10.12.
~2026.11.23.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한 발주자직접지급제 도입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27.1.1.시행)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 (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②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발주자 의무 명확화

-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 및 절차를 명시
- 발주자직접지급제 방식의 시스템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확인하여 지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전화: 044-201-3578, 팩스: 044-201-5548)

소방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12.
~2026.11.23.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은 화재예방을 위해 보일러, 기체연료, 고체연료설비 등 각종 화재위험 설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용접·용단 작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화재위험 작업과 달리 용접·용단 작업만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규정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화재예방방법의 적용체계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화재예방방법의 적용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소방청 예방정책과](#) (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2026-10-12 발의
-------	--	---------------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026-10-12 발의
-------	--------------------------------------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자력 부족,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장기화, 피해자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에게 소액 또는 비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개별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수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2026-10-16 발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상 분쟁조정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 및 조정부회의의 운영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의 출석이 요구됨

최근 분쟁조정 신청의 증가 및 사건 적체 심화로 인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횟수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만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회의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자동 면직됨에 따라 후임 임명 시까지 상임위원이 부재하게 되어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제6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026-10-16 발의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21 및 제234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026-10-16 발의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재정경제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026-10-12 발의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팬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8조)

재정경제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2026-10-13 발의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보일러·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항공유·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8조)**

재정경제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2026-10-16 발의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하루평균 거래량을 감안하여 장기간 분할매수가 필요함. 그러나, 국내 기업의 주가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지주회사들이 기존에 부여된 유예기간만으로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시간적·금전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 제공과 주식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 향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고자 함 (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026-10-16 발의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이에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26조의3 신설)**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윤한홍의원 등 19인)

2026-10-16 발의

전략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중심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등 국가경제 및 경제안보상 중요성이 큰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진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 공제’를 도입하고자 함**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은 부품·소재·장비 등 광범위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세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a)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b)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에 적은 것을 공제한도로 설정하고 있음

7대 품목의 산업은 투자비와 생산비의 비중이 시기별로 다른데도 투자 규모를 토대로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7대 물품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임

이에 **공제한도의 설정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는 그대로 유지하되, 또 다른 기준은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100%(기존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등)**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2026-10-13 발의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의 지분 인수 및 경영 참여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지 등 군사적 관점에서의 안보 결함 가능성이 엄중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경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하되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산업 논리만으로 승인이 강행될 우려가 있음.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거시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협의 주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26인)

2026-10-12 발의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4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9인)

2026-10-14 발의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의 부족, 농업의 기계화·첨단화·규모화 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경영 형태까지 제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화된 농업환경과 다양한 농업경영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투기 등 농업 외 목적의 보유·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6-10-12 발의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인 특별자산펀드는 컨테이너 등 다양한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는 투자대상이 선박으로 제한되어 있어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없음. 이에 동일한 해운산업의 핵심 영업자산임에도 선박과 컨테이너 간 활용 가능한 투자기구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선박운항회사”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회사로만 정의되어 있어, 컨테이너를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주체도 선박투자회사 제도 안에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의 선박에 복수의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의 선택 폭과 민간자본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복수의 회사가 1척의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운자산 투자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6-10-12 발의

현행법은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고압가스의 제조로 보아 제조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와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군부대 안에 군사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하는 수소의 제조·저장·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는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에 대하여 군부대의 장이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류시설과 수소시설 사이에 군사목적 특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용 수소시설은 보안상 외부기관에 설계도서·배치도·저장량 등의 정보 제출과 검사인력의 반복적인 출입이 곤란하고, 안전관리자의 상시 선임 의무가 순환보직 중심의 군 인사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훈련장·시험장 등으로 반복 전개하여 충전하는 군의 운용방식을 규율할 근거가 없어 수소 기반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협의·검사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의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유지하면서 군 수소충전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6-10-1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됨

그런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산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및 융복합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산업센터 입주체계는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5 개정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진욱·박성민의원 등 11인)	2026-10-14 발의
---------------------	--	---------------

우리 조선업은, 대규모 한-미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의 근로현장 도입 등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조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기본법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첨단미래선박 중심의 법령은 일부 제정된 바 있으나 중소조선 및 기자재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전무하여, AI 전환, 전문인력 부족,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에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2026-10-12 발의
---------	---------------------------	---------------

최근 세계 각국은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양성자 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암센터, 서울삼성병원이 양성자 치료기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우리나라 암환자의 50.4%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중입자·양성자 치료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구축되어 지방에 사는 암환자가 중입자·양성자 치료를 받으려면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함

또한,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산 기장군에 구축하고 있는 중입자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중입자·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병원은 중입자·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 제46조제11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026-10-12 발의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2026-10-12 발의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 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발전공기업 5개사가 설립되었음. 이는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영 효율성과 투자 역량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후 단계적인 민영화와 전력시장 경쟁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었음

그런데 후속 구조개편이 중단되면서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체제를 유지한 채 유사한 사업과 기능을 각각 수행하여 왔음. 그 결과 발전회사 간 경쟁 촉진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의 분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어 발전공기업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이에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를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통합 개발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전력소비자의 부담과 미래세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완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석탄화력발전 폐지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5인)

2026-10-16 발의

국가적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거·재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임. 특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버려진 후 상당량이 잔재물로 처리되고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의 편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지난 4월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조·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 의무 주체, 재활용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우선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실질적인 제조책임이 있는 상표부착 주문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과 현장간의 괴리가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라는 점에서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현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세종, 제주 등 컵보증금제 시행지역은 제외)하고 있어, 1회용컵이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편입될 경우 재활용분담금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가중되는 기업부담은 없음

이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2026-10-15 발의

정부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경쟁을 차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법률 제16136호로 현행법을 개정, 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부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2030년 단일 업종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였음

그러나 당초 합의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만 2023년 말까지 한시 보호하고 2024년부터 전면 개방하는 것이었음에도, 전문업계의 반복된 요구로 보호구간이 3억 5천만원을 거쳐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두 차례 확대·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있음

그 결과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종합업체는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구간에 6년째 진출이 봉쇄되어 상호 개방이 아닌 일방향 개방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종합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노·사·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여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시장 개방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등)**

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2026-10-15 발의

서울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affordable”, 즉 청년 및 신혼부부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담가능한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함

임대료 등을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부지가 필요한데, 미군 반환부지 중 낡은 장교숙소, 부사관부지, 군인아파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 가능함. 서울과 같이 주거난이 심각하고 신규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의 대다수를 프레시디오(Presidio) 공원으로 사용하면서 그중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참조가 될 수 있음

그래서 미군 반환부지의 대다수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생태적 의미와 함께 이미 낡은 군인막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극심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안임. 따라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의 일부를 제척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도심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2026-10-15 발의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유희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택부지 부족 등으로 정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광화문·종구, 강남, 여의도 등 3대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탁월하며, 다수 지하철 노선과 근접해 있음. 여기에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에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함.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안 제3조제4호나목 개정 및 제4조제4항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19.(월) 8개 위원회	법사위	서울광역공소청, 수원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00
	국방위	육군본부 및 소관부대 등 13개 기관	계룡대 육군본부 10:00
	문체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26개 기관	국회 10:00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12개 기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	한국가스공사(대구) 10:00
	기후노동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등 24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지방1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0:00
		<지방2반> 경기도	경기도청 10:00
10. 20.(화) 12개 위원회	법사위	<지방1반> 대전고법, 광주고법 등 12개 기관	광주고등법원 10:00
		대전광역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등 7개 기관	광주광역공소청 14:00
		<지방2반> 대구고법, 부산고법 등 11개 기관	대구고등법원 10:00
		대구광역공소청, 부산광역공소청 등 6개 기관	대구광역공소청 14:00
	재경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국회 10:00

	교육위	<지방1반> 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 등 6개 교육청	부산교육청 10:00
		<지방2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7개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10:00
	과방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4개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10:00
	외통위	<미주반> 주토론토총영사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10:00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 10:00
	국방위	해군본부 및 소관부대 6개 기관	계룡대 해군본부 10:00
		공군본부 및 소관부대 4개 기관	계룡대 공군본부 15:00
	행안위	<지방1반>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10:00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10:00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농해수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7개 기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미정	경북 구미 미정
	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7개 기관	국회 10:00
	기후노동위	[현장시찰] 미정	제주 미정
	국토위	[현장시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화성 10:00

10. 21.(수) 5개 위원회	정무위	<종합감사- 비금융>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회 10:00
	교육위	<지방1반>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등 9개 기관	부산대학교 10:00
		[현장시찰] 미정	미정
		<지방2반>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10개 기관	전남대학교 10:00
		[현장시찰] 미정	미정
	행안위	<지방1반> 울산광역시	울산시청 10:00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10:00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7개 기관	국회 10:00
10. 22.(목) 10개 위원회	기후노동위	[현장시찰] 미정	제주 미정
	법사위	공소청	국회 10:00
	정무위	<종합감사-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회 10:00
	재경위	<종합감사>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회 10:00
	과방위	<종합감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회 10:00
	국방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서울) 10:00
		[현장시찰] 육군 제5보병사단(GOP과학화경계 시범사단)	육군 제5보병사단 15:00

	행안위	<지방1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청 10:00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청 시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10:00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도청 감사 종료후
	농해수위	<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종합감사>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	국회 10:00
	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9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
		[현장시찰]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14:00
10. 23.(금) 8개 위원회	재경위	<종합감사>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교육위	<종합감사>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국회 10:00
	과방위	<종합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국회 10:00
	문체위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등	국회 10:00
	농해수위	<종합감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종합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청 및 소관기관	국회 10:00
	기후노동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회 10:00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19(월) 10:00	「AI 시대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 토론회	안호영·김형동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21(수) 10:00	드라마 스태프의 숨겨진 노동시간, 가려진 권리	이용우·이정문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0/21(수) 13:30	김치자금률 법제화 국회 토론회	박지원·이개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21(수) 14:00	AI·로봇 산업 생태계 전략 국회포럼	이연주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21(수) 15:00	"대한민국, 글로벌 5대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FTA·통상 자원의 AI플랫폼 전환(AX)과 EU통상 규제 대응 전략"	장철민·박희승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22(목) 10:00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분야 정책 토론회	김주영·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자료집 등	10/2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1호(통권 제309호)	국회도서관	
	10/21(수)	「금주의 서평」 제2026-40호(통권 제799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12(월)	「Data+」 제2026-16호(통권 제40호)	국회도서관	
	10/14(수)	「금주의 서평」 제2026-39호(통권 제798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12(월)	건설/부동산	감리업체가 시공사에게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벌점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벌점부과 취소 의결을 이끌어낸 사례
10/13(화)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 및 시사점 :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및 반복 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 강화
10/13(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기관투자자 주주관여의 본격화: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소통 체계 구축
10/13(화)	에너지·인프라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공고 및 ESS 구축지원 사업 공고
10/14(수)	방송통신(TMT)	통신 분야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10/16(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9. 30.- 2026. 10. 13.)
10/16(금)	공정거래	자진신고제도를 비롯한 담합 관련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 공정위, 반복담합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추진, 자진신고 감면 혜택 축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10/16(금)	방송통신(TMT)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